

【 3 】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 규칙안

제안년월일 : 2004년 12월 2일
제 안 자 : 이항율 의원 외 1인

1. 개정이유

-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담당하는 기능과 서로 부합되지 않아 사실에 맞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로 변경함(안제61조, 안제62조, 안제64조)
- 결산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특별위원회로 변경함(안제65조)

양주시 의회규칙 제 호

양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양주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 중 “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위원회”라 한다)”를
“예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산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
동조 단서 중 “예결위원회”를 “예산위원회”로 한다.

제62조 중 “예결위원회”를 “예산위원회”로 한다.

제64조 중 “예결위원회”를 “예산위원회”로 한다.

제65조 중 “이를”다음의 “예결위원회”를 “결산특별위원회(이하
“결산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회부하고” 다음의 “예결위원
회”를 “결산위원회”로 하며, 동조 단서 중 “예결위원회”를 “결
산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예산안 심의)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.	제61조(예산안 심의)----- ----- 예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산위원회"라 한다) ----- 다만 예산위원회의----- -----
제62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	제62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예산위원회 ----- -----
제63조 ① (생략) ② (생략)	제63조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64조(예산안의 재심요구)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.	제64조(예산안의 재심요구) ----- 예산위원회----- ----- 예산위원회----- -----
제65조(결산의 심사)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은 때에는 결산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.	제65조(결산의 심사) ----- ----- 이를 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결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결산위원회의 심사가----- ----- 다만, 결산위원회----- -----